

# 『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#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08년 6월 19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8년 6월 19일

라. 상정일자 : 2008년 6월 30일

제13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 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국장 김 수 복

나. 제안이유

- 새 정부의 국정 최우선 과제인 규제개혁과 경제살리기에 역량을 강화하고 신규 행정수요가 발생된 업무와 부서간 업무조정 등에 따른 기관별 소관업무를 규정하려는 것임

다. 주요내용

- 기구 명칭변경 (안 제6조제1항)
  - 「정책혁신담당관」 → 「규제개혁담당관」
- 농업경영인 단체 업무이관 (안 제15조제3호)
  - 「농업기술센터」 → 「출장소 농정과」
- 「호적법」이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로 변경되어 조문개정 (안 제24조)
  - 호적 → 가족관계등록

## 라. 참고사항

-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- 시·군 조직개편 지침시달 회의서류('08.5.6 경상북도)

## 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수 영

### ○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

- 새정부의 국정 최우선 과제인 규제개혁과 경제살리기 등 신규 행정수요가 발생된 업무와 부서간 업무조정 등에 따른 관련 사항을 개정하는 조례안 임

### ○ 주요 개정내용은

- 전체 행정기구(課) 수는 변동없이 현행을 유지하고
- 본청 「정책혁신담당관」 부서명칭을 「규제개혁담당관」으로 변경하면서 분장사무를 「행정혁신 및 지방분권관련 업무」를 「규제개혁 관련 업무추진 총괄」로 조정하였음
- 농업기술센터 소관사무인 「농업경영인 단체업무」를 출장소로 이관하면서
  - 「농업경영인 및 여성농업인 단체 육성」 업무를 출장소 소관사무로 신설하였음

### 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('08.5.6)에 의거 정부조직의 기능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 임
- 부서 명칭변경 및 부서간 업무조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를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     략

5. 토    론    요    지 : 생     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     음

7. 심    사    결    과 : 원안가결